## 무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

[시행 2025.01.01] (제정) 2024.09.09 조례 제2943호

> 관리책임부서명: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관리책임전화번호: 061-450-503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무릎 인공관절 수술"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.
- 2. "수술비"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"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"를 말한다.
- 3. "수술 의료기관"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무안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(이하 "지원 대상자"라 한다)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.

- 1.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
- 2.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"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"진단을 받은 사람
- 3. 신청일 전월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

**제4조(지원범위)**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- 1. 간병비, 상급 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
- 2.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, 치료비, 수술비, 입원비 등 의료비
- 3. 통원진료비
- 4.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

**제5조(비용의 부담)**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.

**제6조(지원신청)**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을 받을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수술시행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원결정)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.
- ③ 지원 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수술비 지급) ① 수술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는 퇴원한 후 증빙서류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수)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.

## 부칙(제정 2024.9.9. 조2943)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